

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)

-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서 반복 규정하지 않도록 삭제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입법의 “반복규정 금지원칙”에 따라 법 제3조와 “반복규정”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보훈단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"보훈단체"란 평창군 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